그라운드골프 경기시설·용품 공인 규정

제정 2019. 8. 23.
개정 2024. 01.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회원종목단체규정’ 제4조제8항에 따라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공인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공인제도 운영) ① 협회는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의 경기규칙에 의거한 규격품 사용을 제도화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운영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인제도를 운영한다.

② 공인제도 운영을 통해 외국산 경기 용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산경기용품의 생산을 촉진하여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내.외 경기대회 참가 및 훈련에 국산 경기용구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③ 협회는 공인과 관련하여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의 공인규정을 벗어난 공인 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 업체의 제품 사용을 강요하거나 공인료를 필요 이상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규정 제정) 협회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그라운드골프의 경기시설·장비와 관련된 공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시설·용품 공인규정’(이하 “공인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시설·용품 공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기시설·용품 공인 및 검정
2. 경기시설·용품의 타당성 검토
3. 경기시설·용품의 안전성 검토
4. 공인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심사
5. 공인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6. 외국산 경기용품 수입 승인 및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
7. 공인 약정 준수 여부 확인
8.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조언
9. 기타 경기시설·용품의 공인과 관련된 업무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7명 내외(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의 위원은 경기인 출신, 공학·생산 분야 전문가, 인증 전문가, 법률가 등 전문 분야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가 외부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경기시설·용품 공인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외부인사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협회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협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공인 심의

제11조(공인대상) 공인은 그라운드골프의 경기시설(부대시설 포함) 및 경기용품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기준) ① 협회는 공인 심의를 위해 경기 적합성,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공인 대상에 대해서는 공인 대상 수의 제한 등 별도의 추가 조건을 두지 않고 공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 관련 기준은 국제그라운드골프연맹 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국제그라운드골프연맹 기준과 상이한 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 및 사유를 '공인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공인 심사신청을 받기 30일 전까지 공인을 위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실비, 공인료 부과 기준, 국제그라운드골프연맹의 규정 등 세부사항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에 대한 제척) 협회의 임·직원 및 그 친족이 임·직원으로 있는 업체의 용품은 협회로부터 독점 공인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대회 공인의 제한을 받는다.

제14조(심의방법) ① 위원회는 공정한 공인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평가를 전문평가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② 평가방법은 서류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설비·용품 검사, 현장 테스트 평가 등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 공인) ① 위원회가 경기시설에 대해 공인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인을 승인하여야 한다.

1. 경기시설 및 부대시설의 국제규격 부합 여부
2. 시공업체의 유사 경기시설 시공 실적

3. 시설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4. 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입찰 여부 등 선정 절차의 공정성

② 시설 공인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경기기설의 설계단계부터 협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용품 공인) ① 위원회는 경기용품에 대해 공인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인을 승인하여야 한다.

1. 경기용품의 국제그라운드골프연맹 기준 부합 여부

2. 경기용품 생산업체가 해당 공인용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등록 유무, 자산 규모, 세금 납부실적, 생산시설 규모 및 기술진, 사업 실적 등)

② 대회에서 사용되는 경기용품의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협회는 국제대회,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를 주관하는 단체가 대회에서 사용되는 경기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기용품 결정 전 대회 주관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경기용품의 공인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7조(공인료) ① 협회는 경기용품에 대하여 공인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료 기준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공인규정’의 별표로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인료는 공인을 위한 출장비 및 평가비 등 실비를 반영하여 책정하며 그 산출내역을 공인료 기준표에 적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공인료 수입에 대해서는 예산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집행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인기한) ① 시설에 대한 공인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② 용품에 대한 공인기한은 2년 단위로 갱신하되 협회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

할 수 있다.

제4장 사후 관리

제19조(결과 공개) 협회는 공인의 결과에 대해 이사회 및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인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인 대상 시설 및 용품 목록
2. 공인 기간
3. 공인 시설 및 용품 생산업체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사무소 주소
4. 공인료

제20조(시정요구) ① 협회는 공인 후에도 해당 용품이 관련 규정 및 규격에 위배되거나 그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인 후 용품의 하자로 인해 경기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거나 문제점 보완에 대한 협회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공인기간 중이라도 공인 대상에 대해 공인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규정의 해석) 협회가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개선요구) 공인제도 운영과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정의 제·개정) ① 협회가 '공인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로부터 승인받은 '공인규정'은 협회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공인을 받아 계약기간 중에 있는 업체 및 품목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공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존 (사)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용구제작 표준규칙 및 인정코스 규칙은 폐기하고 이 규정으로 대체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인료 기준표

▸ 공인료 기준 의결 회의: 제○차 ○○○회의(2○○○. ○. ○○.)

▸ 공인료 기준표

공인품목	공인료 (단위: 천원)	공인료 산출내역 주)	비 고
		▪ 회의비 ▪ 출장비 ▪ 검사비 ▪ 기타	

주: 단체에 따라 산출내역의 항목 추가 가능

[별표1]

그라운드골프 경기용품 인정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2○○○년도 공인 결과

▶ 공인 결과 의결 회의: 제○차 ○○○회의(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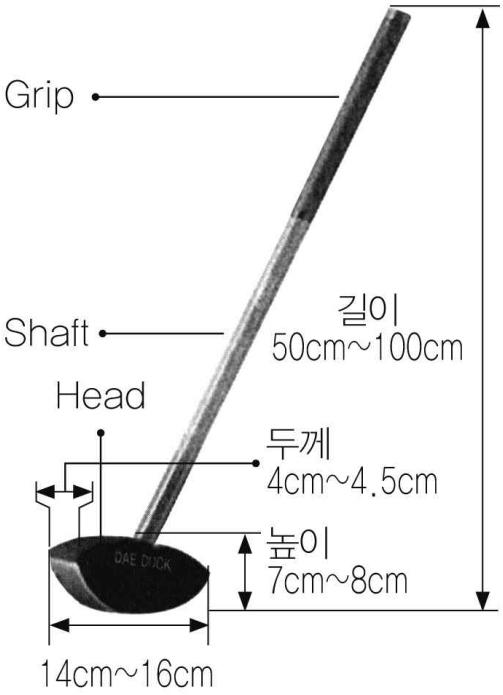
▶ 공인 내역

공인품목	식별정보[1)]	생산업체/관리주체[2)]	공인기간	공인료 (단위: 천원)

주: 1. 식별정보는, 용품의 경우에는 제품 모델명 및 모델번호를 기입하고,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명칭 및 주소를 적습니다.

2. 용품의 경우 생산업체에 대해 적는데 “업체명(대표자명)”을 기입하고, 시설의 경우 관리주체에 대해 적는데 “관리주체단체명(단체장명)”을 기입합니다.

1. 클 럽



○샤프트

- 길이 : 50㎝ ~ 100㎝
- 굵기 : 30㎜(±1㎜)

○헤드의 길이

- **굵기 : 22mm ~ 30mm(±1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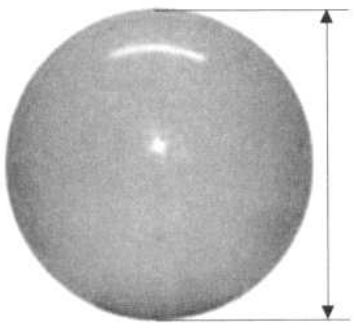
○헤드의 폭

- 7㎝ ~ 8㎝

○헤드의 두께

- 4㎝ ~ 4.5㎝

2.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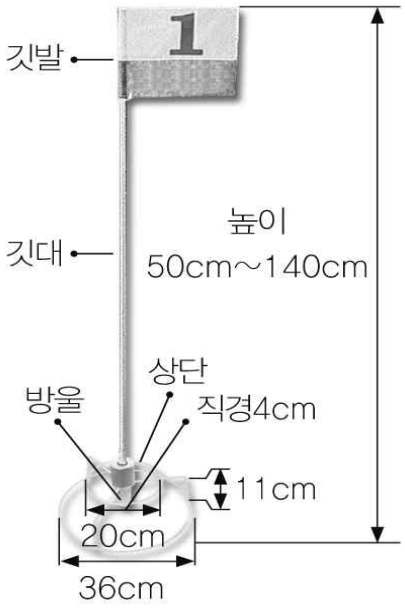


○무게 : 75g ~ 95g 이하

○직경 : 6㎝(±1㎜)

○재질 : 합성수지

3. 홀 포스트



○ 홀 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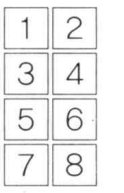
- 홀(hall)
  - 밑면 직경 : 36㎝
  - 윗면 직경 : 20㎝
  - 테두리 선(굵기) : 6㎜이내(±1㎜)
- 깃대(poll)
  - 깃대 의 외경 : 1.5~2㎝
  - 깃대의 높이 : 지표로부터 50~140cm
- 깃발
  - 1~8번의 숫자를 50미터 이상에서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 방울직경 4㎝
  - 방울과 지면사이 2㎝

4. 스타트 매트

○ 재질 : 고무소재

○ 규격 : 가로 12㎝×세로 30㎝

○ 두께 : 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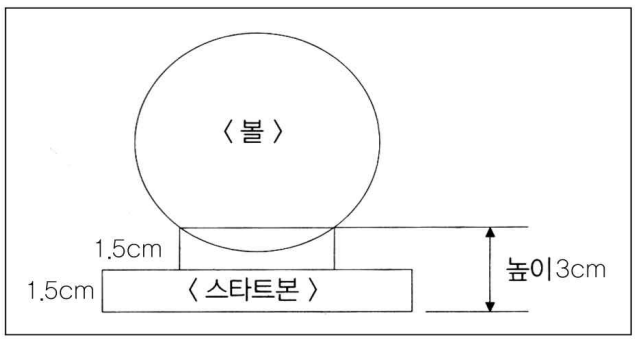
〈번호〉



〈스타트 본〉



〈스타트 매트〉



〈스타트 본과 지면과의 높이〉